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수리 기준을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계열회사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표 6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표 제1호의2(중전의 제1호)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5백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종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u> <u>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u>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u> <u>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u> <u>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다음</u> <u>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u> <u>해야 한다.</u> <u>1. 합병계약서 사본</u> <u>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u> <u>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u> <u>3.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u> <u>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u> <u>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u> <u>는 서류</u> <u>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u> <u>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u> <u>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u> <u>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합</u> <u>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u> <u>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u> <u>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541